



동물검역소에서의 중요한 공지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2020년7월1일(시행 예정)부터

수입검사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반입한 경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WARNING!!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인상됩니다!

※단,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5,000만엔

- ◆수하물 중에 **수입신고가 없는 육제품 등의 축산물**이 확인된 경우 **벌칙 대상**이 됩니다.
- ◆육제품 등의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해서 체포된 사람도 있습니다.
- ◆수입검사 절차에서 **여권이나 탑승권 정보를 기록**하므로 검사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